

광주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가단5242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7226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가단524233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강지인

변론종결 2021. 11. 2.

판결선고 2021.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2,26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9. 6. 24. 접수 제9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09. 6.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의 배우자 D의 소유이던 전남 담양군 C 답 7,52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전남 담양군 C 답 7,527㎡는 2009. 10. 13. 위 C 답 2,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 E 답 4,189㎡, 위 F 답 1,073㎡로 분할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6.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의 사망 후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전남 담양군 E 답 4,189㎡를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피고 사업이 어려워져 우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가 위 E 토지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피고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기화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임의로 경료한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